지식경제부 보도자료	http//www.mke.go.kr
2011년 4월 2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박덕렬 엔지니어링플랜트팀장, 이창원 사무관(2110-4696)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 대폭 개선된다..!!

- 전문분야 통폐합(93개→48개) 및 신고인력(5명→3명) 축소 시행 -

- 기술자 신고와 연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본격 도입 -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기준인 **전문분야를 기존의 93개에서 48개분야로 통·폐합**하고 **전문분야 신고인력 수를 축소**하는 등 **사업자 신고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함.

○ 이와 함께,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로이 시행**됨으로서 엔지니어링 기술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임**.

□ 동 제도는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후속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동 법 시행령 전부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금번 **하위 규정인 고시 제·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

* 법률 개정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10.4), 시행령('11.1), 시행규칙 ('11.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하위규정(고시 등) 제·개정(4.27)〉

명 칭	법적근거	구 분	비 고
엔지니어링기술자경력관리기준	영제4조별표2의제2호바목	고 시	제 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법 제31조제2항	고 시	개 정
엔지니어링 위탁업무처리규정	규칙 제18조제1항	기 준	개 정

□ 금번 하위규정 제·개정을 통하여 5월 1일부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가 본격 개선·시행**하게 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업계는 **신고 분야의 축소, 신고요건 완화** 및 **신고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될 전망임.

○ 특히,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분야가 93개에서 48개로 대폭 축소**되고, 동일 기술부문의 **전문분야 추가 신고시** 신고 기술인력 수가 **기존의 5명에서 3명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경영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전문 분야	93개 전문분야	48개 전문분야	42개 통폐합 6개 신설
신고 인력	동일 기술부문 전문분야 추가시 5인	동일 기술부문 전문분야 추가시 3인	신고인력 감소 * 최초신고시 전문분야별 5인
처리 기간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기간 단축

□ 이와 함께, 사업자 신고제도와 연계한 **기술자 경력관리제도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4,600여개 업체의 7만여명의 **기술자들에 대한 경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 엔지니어링기술자들의 **경력증명이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 시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기술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됨.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 종류 및 처리 기간〉

경력증 종류	소요기간	비 고
①경력증명서 ②보유증명서 ③기술자 경력증	익일 이내 (우편은 5일)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및 증명서 발급 가능
①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주청 제출)	5일 이내	

<붙임1>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 신고제도 주요 개정 내용

<붙임2> 엔지니어링산업의 주요 현황 통계자료

[붙 임 1]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자 신고 제도 주요 개정 내용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제도

□ 관련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제22조(사업자 신고 및 제한)

* 엔지니어링사업자 정의 :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법 제2조 제4항)

□ 사업자 신고절차

○ 신고 요건을 갖추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법 제21조 내지 23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류 접수 → 신고 서류 검토 → 문제 발생시 보완요청 → 신고 처리 완료 → 신고증 교부

□ 신고업무 처리기간

○ 사업자 신고업무 처리기간이 15일에서 7일로 대폭 단축

구 분		사업자 신고업무 처리기간	
		당 초	변 경
신규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신고	분야추가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기타 변경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지위승계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휴업·폐업신고		-	접수일로부터 익일 이내
휴업 후 재개업신고		-	접수일로부터 익일 이내

□ 전문분야 및 신고요건

구 분	종 전	개 정	비 고
전문분야	93개 전문분야	○ 48개 전문분야	신고분야 축소
신고요건	전문분야별로 필수기술인력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기술인력 5인 이상 (엔지니어링업)	○신고요건 구 분 / 기술인력 / 사무실 엔지니어링업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4명이상 / 엔지니어링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보유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엔지니어링컨설팅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보유 – 동일 기술부문에 **전문분야 추가신고시** :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고급기술자 이상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2명 이상**	기술인력 외에 사무실 요건 추가, 분야 추가시 신고요건 완화

2.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제도

□ 관련 근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 엔지니어링기술자 정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법 제2조)

□ 기술자 신고절차

○ 법 제26조 및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요건을 갖추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신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서류 접수 → 신고 서류 검토 → 기술자 등급산정 → 신고 처리 완료 → 증명서 교부

□ 신고 시 구비서류

①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② 졸업증명서 1부 ③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교육·훈련사항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상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고업무 처리기간

구 분	처리기간
신규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일로부터 익일 이내
학과 등 인정신청 및 경정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경력증 발급 기간

구 분	소요기간	비 고
①경력증명서 ②보유증명서 ③기술자 경력증	익일 이내 (우편은 5일)	우편,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 및 증명서 발급 가능
①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발주청 제출)	5일 이내	

□ 경력심의 경정 심의·조정

○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 자격, 경력에 대한 경정(재심) 심의·조정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심의위원회	경력심의 실무위원회
– 위원장 : 협회 임원 – 위 원 : 산·학·연 전문가 7명이내로 구성 – 회 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함	– 협회 전문가 5명이내로 구성, 일반적인 사항 심의·의결

* 기술자가 등급 산정에 대한 경정(재심) 신청시 1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붙 임 2]

엔지니어링산업의 주요현황 통계 자료

1. 전체 엔지니어링 분야 시장현황

(단위 : 억원, 개사)

구 분 \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 주 액	52,129	51,941	48,920	61,775	65,344	76,668	87,630
총업체수	2,304	2,663	3,037	3,419	3,673	3,974	4,267
실적신고업체수	1,362	1,595	1,571	1,847	1,758	1,913	1,968

2. 주된기술부문별 엔지니어링 업체수 및 신고인력 현황('11.3.31현재)

(단위 : 개사, 명)

주된부문	업체수	신고인력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박사	석사	학사	전문대	기타	합 계
기계	252	237	1,215	202	68	212	1372	362	34	3,702
선박	19	40	114	10	3	23	215	25	8	438
항공우주	2	1	8	5	6	5	6	0	0	31
금속	5	1	12	1	6	8	13	0	2	43
전기전자	208	124	769	293	19	122	591	200	11	2,129
통신정보처리	812	237	2,578	1,633	79	295	1498	496	33	6,849
화학	38	26	195	15	11	50	448	25	5	775
광업자원	3	4	10	1	0	0	0	0	0	15
건설	2,806	4,283	19,486	2,394	524	2,203	18,227	4,582	681	52,380
환경	159	59	768	124	54	144	530	61	7	1,747
농림	183	7	410	39	17	14	485	14	0	986
해양수산	46	23	42	18	51	98	124	5	0	361
산업관리	20	29	107	36	1	1	14	5	0	193
응용이학	115	103	709	61	72	100	442	60	12	1,559
합 계	4,668	5,174	26,423	4,832	911	3,275	23,965	5,835	793	71,208